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10. 16.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지출계획에서 고유의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를 별도로 신설함
  - (정책사업 추가)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로 구분

지출계획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예치금				



지출계획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예비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예치금				

- 남북관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체험학습(1억원), 학술·문화·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2억원) 등의 3억 5,360만원의 지출이 어려움
- 이에 고유의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로 조성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계	1,000,000	1,000,000	-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1,000,000	-
이 자 수 입	-	-	-
예 치 금 수 회	-	-	-

지출 계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계	1,000,000	1,000,000	-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1,000,000	-	△1,000,000
남 북 교 육 교 류 협 력 사 업	353,600	-	△353,600
예 치 금	646,400	-	△646,400
예 비 비 및 기 타 ( 예 치 금 )	-	1,000,000	1,000,000

-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10억원 감소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3억 5,360만원 감소: (당초) 3억 5,360만원 → (변경) 0원

- ▶ 예치금 6억 4,640만원 감소 : (당초) 6억 4,640만원 → (변경) 0원
-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10억원 증가
- ▶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를 별도 정책사업으로 분리 편성: (당초) 0원 → (변경) 10억원

####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2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8조에<sup>1)</sup>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기금법」 제11조에<sup>2)</sup>

1)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에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책사업을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으로 구분하고, 기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편성된 예치금 6억 4천 640만원과 남북 관계, 코로나-19 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3억 5천 360만원 등 총 10억원을 감액하여 신설된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지출계획 중 별도의 정책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동 기금운영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예치금까지 단 1개의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포함시켜 운용되고 있는바,

예치금은 여유재원을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출항목이라는 점에서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16개 기금을 운영하며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동일한 정책사업에 포함시켜 편성·운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동 기금변경안의 기금 지출항목 중 예치금을 고유사업과 다른 별도의 정책사업에 편성·운용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동 기금변경안의 지출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3억 5천 36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되는데, 최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제재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의 지속 및 확산 추세

에 있는 코로나19 등 사실상 대내외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요인과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0.4.30.] [법률 제16887호, 2020.1.29.,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